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	배포일시	2016. 7. 22(금) 총 3매(본문3)	
담당 부서	주택기금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택기금과장 김홍목, 사무관 김수영, 주무관 송혜주 • ☎ (044)201-3340, 3344
보 도 일 시		2016년 7월 22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방송센터넷은 7. 21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‘16.8.12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이상 가입자 이자율 0.2%p(2.0%→1.8%) 인하

- 국토교통부(장관 강호인)는 주택청약종합저축(청약저축 포함, 이하 동일) 2년이상 가입자의 이자율을 오는 ‘16.8.12일부터 기존 2.0%에서 1.8%로 0.2%p 인하하는 내용의 「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」 개정안을 행정예고(7.22~8.11)한다고 밝혔다.
- 이는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(1.5→1.25%)와 그에 따른 시중금리 인하*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,
 - * [‘16.7.5. 은행연합회 상품별 공시] 정기예금(2~3년) 1.34%
- 국토부는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도시기금 기금 운용심의회 심의·의결을 거쳐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주택 청약종합저축 금리를 0.2%p 인하하기로 하였다.

<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조정 내용 >

저축기간	1개월 이내	1년 미만	2년 미만	2년 이상
기 존	0%	1.0%	1.5%	2.0%
변 경	동 일	동 일	동 일	1.8%

○ 다만, 시중 금리를 고려하여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서만 금리를 일부 인하하였고,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하였으며 연말 소득공제* 및 기금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** 사항도 계속 유지된다.

*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로서 무주택세대주인 경우, 당해 과세연도 납부분(연간 240만원 한도)의 40% 범위내에서 소득공제

** 주택청약종합저축 1년 및 12회 이상 납입자는 (또는 민영주택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후 1년이상) 0.1%p, 3년 및 36회 이상 납입자(3년 이상)는 0.2%p 인하

○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으로서 시행일 이후에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 변경된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.

※ (예시) '13.1.1 가입 시 1회 입금하고 '16.08.31 해지 시 적용 이자율 :

('13.1.1~'13.7.21) 4.0%, ('13.7.22~'14.9.30) 3.3%, ('14.10.1~'15.2.28) 3.0%, ('15.3.1~'15.6.21) 2.8%, ('15.6.22~'15.10.11) 2.5%, ('15.10.12~'16. 1.3) 2.2% ('16.1.4~'16.8.11) 2.0%, ('16.8.12~) 1.8%

구 분	1개월 이내	1개월초과 1년 미만	1년 이상 2년 미만	2년 이상
82.07.23. ~ 85.12.31.	0%	1.8%	3%	6%
86.01.01. ~ 92.07.12.	0%	2.5%	5%	8%
92.07.13. ~ 02.10.28.	0%	2.5%	5%	10%
02.10.29. ~ 06.02.23.	0%	2.5%	5%	6%
06.02.24. ~ 12.12.20.	0%	2.5%	3.5%	4.5%
12.12.21. ~ 13.07.21.	0%	2.0%	3.0%	4.0%
13.07.22. ~ 14.09.30.	0%	2.0%	2.5%	3.3%
14.10.01. ~ 15.02.28.	0%	2.0%	2.5%	3.0%
15.03.01. ~ 15.06.21.	0%	1.8%	2.3%	2.8%
15.06.22. ~ 15.10.11.	0%	1.5%	2.0%	2.5%
15.10.12. ~ 16.1.3.	0%	1.2%	1.7%	2.2%
'16.1.4 ~ 16.8.11	0%	1.0%	1.5%	2.0%
'16.8.12 ~	0%	1.0%	1.5%	1.8%

□ 한편 국토부는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청약 종합저축 금리 조정 외에 지난 5.30일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0.2%p 인하하였고, 신혼부부에 대한 금리우대를 상향(0.5%p) 하였으며,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금리우대도 0.3%p 상향조정(0.2→0.5%)하여 시행하고 있으며,

○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추가 대출금리 인하를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.

□ 이밖에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(<http://www.molit.go.kr>)의 법령정보/입법예고·행정예고란에 게시된 ‘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’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

○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11일까지 우편,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* 의견제출처 :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
(전화 : 044-201-3344, 팩스 044-201-5530)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김수영 사무관(☎ 044-201-334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